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5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서미화 · 윤준병 · 김교홍
문진석 · 김 윤 · 서삼석
이주희 · 정혜경 · 성일종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비만병은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성인 및 소아·청소년의 비만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병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비만병의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비만병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조사·연구, 치료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만병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비만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비만병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만병예방·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비만병예방·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비만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료, 영양, 신체활동, 사회복지 등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치료지원 및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비만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함(안 제20조).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만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비만병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사람의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인 상태를 말한다.
2. “비만병”이란 비만으로 인한 조직, 장기 또는 개인의 신체 기능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전신 질환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비만병예방·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비만병 예방·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만병 예방·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비만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비만병의 진단·치료
4. 소아,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비만병 예방 및 관리
5. 비만병 예방 교육
6. 비만병에 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비만병 예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만병 예방·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

른 비만병예방·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에 비만 예방 및 관리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 ① 종합계획의 수립 등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비만병 기준에 관한 사항
4. 비만병 예방 및 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만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만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비만병 예방, 치료, 연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만 및 비만병 관련 단체나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제1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 예방·관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비만 및 비만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비만 및 비만병 통계를 작성하여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영양, 신체활동, 사회복지 등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치료지원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비만병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만병의 진단 및 치료비용의 지원
2. 중증 비만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의 지원
3. 의료인이 비만 및 비만병 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
4. 비만병 치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그 밖에 치료지원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만 및 비만병 예방 교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및 비만병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및 비만병 예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연구 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비만 및 비만병의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2. 비만병으로 인한 질병 및 치료방안에 관한 사항
3. 비만 및 비만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
4. 소득수준, 연령, 성별 등의 요소와 비만 및 비만병의 관계에 관한

사항

5. 비만 및 비만병 관련 인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7. 해외의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비만의 날) ① 비만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등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